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
단위: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	9,078,770	7,396,874	1,681,896
	국 32,869		
	기 3,141,524		
	도 1,041,843		
	시 4,862,534		
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	1,605,842	1,218,709	387,133
	국 21,900		
	기 201,993		
	도 162,690		
	시 1,219,259		
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	9,100	11,800	△2,700
건강도시 조성	9,100	11,800	△2,700
201 일반운영비	8,200	8,200	0
01 사무관리비	5,400	5,400	0
○보건 기획업무 운영비 4,000,000원	4,000		
○건강도시 포럼 및 워크숍 참가비 100,000원*2명*2회	400		
○건강도시운영위원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100,000원*10명*1회	1,000		
02 공공운영비	2,800	2,800	0
○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2,000,000원	2,000		
○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연회비 800,000원	800		
203 업무추진비	900	3,600	△2,700
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	900	3,600	△2,700
○건강도시 조성 업무추진 900,000원	900		
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	884,299	629,526	254,773
	국 21,900		
	기 201,993		
	도 162,690		
	시 497,716		
신속대응반 운영 지원	1,990	1,990	0
	기 1,393		
	도 597		
201 일반운영비	1,990	1,990	0
	기 1,393		
	도 597		
01 사무관리비	1,990	1,990	0
○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1,990,000원	1,990		
	기 1,393		
	도 597		
의약무 관리 운영지원	6,050	6,850	△800
201 일반운영비	6,050	4,850	1,200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
단위: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01 사무관리비	4,300	3,100	1,200
○의료기관 개설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,000원*7명*3회	2,100		
○의료기관 등 관리 운영 및 홍보 1,000,000원	1,000		
○응급의료협의체 참석수당 100,000원*12명*1회	1,200		
02 공공운영비	1,750	1,750	0
○의약무관리사업 안내 우편물 발송 500원*3,500명	1,750		
취약지 소아 야간 · 휴일 진료기관 육성 지원	109,200	0	109,200
	도 32,760		
	시 76,440		
307 민간이전	109,200	0	109,200
	도 32,760		
	시 76,440		
02 민간경상사업보조	109,200	0	109,200
○취약지 소아 야간 · 휴일 진료기관 지원 109,200,000원*1개소	109,200		
	도 32,760		
	시 76,440		
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	200,000	0	200,000
	기 140,000		
	도 60,000		
307 민간이전	200,000	0	200,000
	기 140,000		
	도 60,000		
02 민간경상사업보조	200,000	0	200,000
○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 100,000,000원*2개소	200,000		
	기 140,000		
	도 60,000		
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	60,000	144,000	△84,000
	기 42,000		
	시 18,000		
307 민간이전	60,000	144,000	△84,000
	기 42,000		
	시 18,000		
02 민간경상사업보조	60,000	144,000	△84,000
○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 60,000,000원*1개소	60,000		
	기 42,000		
	시 18,000		
공공야간 · 심야약국 운영 지원(국비)	43,800	0	43,800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
단위: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국 21,900		
	시 21,900		
307 민간이전	43,800	0	43,800
	국 21,900		
	시 21,900		
02 민간경상사업보조	43,800	0	43,800
○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(국비)			
43,800,000원*1개소	43,800		
	국 21,900		
	시 21,900		
공공심야약국 운영(도비)	43,800	0	43,800
	도 13,140		
	시 30,660		
307 민간이전	43,800	0	43,800
	도 13,140		
	시 30,660		
02 민간경상사업보조	43,800	0	43,800
○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(도비)			
43,800,000원*1개소	43,800		
	도 13,140		
	시 30,660		
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	5,600	5,400	200
	기 2,800		
	시 2,800		
201 일반운영비	500	1,400	△900
	기 250		
	시 250		
01 사무관리비	500	1,400	△900
○소모품 구입 500,000원	500		
	기 250		
	시 250		
405 자산취득비	5,100	4,000	1,100
	기 2,550		
	시 2,550		
01 자산및물품취득비	5,100	4,000	1,100
○자동 심장충격기 1,700,000원*3대	5,100		
	기 2,550		
	시 2,550		
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	10,000	10,000	0
	기 5,000		
	시 5,000		
201 일반운영비	10,000	10,000	0
	기 5,000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
단위: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시 5,000		
03 행사운영비	10,000	10,000	0
○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10,000,000원	10,000		
	기 5,000		
	시 5,000		
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	150,000	200,000	△50,000
307 민간이전	150,000	200,000	△50,000
01 의료 및 회복비	150,000	200,000	△50,000
○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12,500,000원*12월	150,000		
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	30,000	30,000	0
307 민간이전	30,000	30,000	0
01 의료 및 회복비	30,000	30,000	0
○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치료비 지원 500,000원*60명	30,000		
진료 운영 지원	12,500	26,500	△14,000
101 인건비	8,000	12,000	△4,000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8,000	12,000	△4,000
○진료의사 대체인력 400,000원*20일	8,000		
201 일반운영비	3,000	3,000	0
02 공공운영비	3,000	3,000	0
○일반 의료장비 유지 300,000원*10회	3,000		
307 민간이전	1,500	9,000	△7,500
01 의료 및 회복비	1,500	9,000	△7,500
○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750,000원*2회	1,500		
방사선 의료영상 운영 지원	62,973	56,236	6,737
201 일반운영비	22,173	11,436	10,737
01 사무관리비	22,173	11,436	10,737
○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수수료 18,700원*2명*5회	187		
○방사선실 운영 소모품 구입 200,000원	200		
○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 검사 186,000원	186		
○흉부촬영 장비 유지운영 1,800,000원*12월	21,600		
307 민간이전	40,800	44,800	△4,000
01 의료 및 회복비	40,800	44,800	△4,000
○방사선 의료영상 판독비 3,400,000원*12월	40,800		
초등학생 치과주치의	112,386	108,550	3,836
	도 56,193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
단위: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시	56,193		
201 일반운영비		4,200	3,910	290
	도	2,100		
	시	2,100		
01 사무관리비		4,200	3,910	290
○사업운영 및 홍보 4,100,000원		4,100		
	도	2,050		
	시	2,050		
○지역협의체 운영 및 참석수당 100,000원*1명*1회		100		
	도	50		
	시	50		
307 민간이전		108,186	104,640	3,546
	도	54,093		
	시	54,093		
01 의료 및 회복비		108,186	104,640	3,546
○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 진료비 108,186,000원		108,186		
	도	54,093		
	시	54,093		
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(구강건강관리)		36,000	40,000	△4,000
	기	10,800		
	시	25,200		
201 일반운영비		5,000	5,000	0
	기	1,500		
	시	3,500		
01 사무관리비		5,000	5,000	0
○구강보건사업 운영 및 홍보 2,500,000원*2회		5,000		
	기	1,500		
	시	3,500		
202 여비		2,000	2,000	0
	기	600		
	시	1,400		
01 국내여비		2,000	2,000	0
○출장여비 10,000원*2명*10일*10월		2,000		
	기	600		
	시	1,400		
307 민간이전		29,000	33,000	△4,000
	기	8,700		
	시	20,300		
01 의료 및 회복비		29,000	33,000	△4,000
○의약품 및 소모품 14,500,000원*2회		29,000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
단위: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기 8,700		
	시 20,300		
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	712,443	575,383	137,060
보건 의료서비스 지원	81,239	91,329	△10,090
101 인건비	40,479	54,289	△13,810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40,479	54,289	△13,810
○모현보건지소 인건비	19,620		
ㅇ기본급 93,360원*1명*191일	17,832		
ㅇ유급휴일수당 93,360원*1명*17일	1,588		
ㅇ명절수당 200,000원*1명*1일	200		
○보건소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	20,859		
ㅇ국민연금 2,600,000원*9명*8월*4.5%	8,424		
ㅇ건강보험 2,600,000원*9명*8월*3.545%*112.95%	7,496		
ㅇ고용보험 2,600,000원*9명*8월*1.75%	3,276		
ㅇ산재보험 2,600,000원*9명*8월*0.888%	1,663		
201 일반운영비	34,160	33,440	720
01 사무관리비	13,760	26,440	△12,680
○의약품구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,000원*9명*2회	1,800		
○피복비(가운) 80,000원*10명	800		
○감염성 의료폐기물 위탁처리	11,160		
ㅇ보건소 280,000원*12월	3,360		
ㅇ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50,000원*13개소*12월	7,800		
02 공공운영비	17,400	3,000	14,400
○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부담금 3,000,000원	3,000		
○우편요금 1,200,000원*12월	14,400		
03 행사운영비	3,000	4,000	△1,000
○농촌지역 응급의료 프로그램 운영 3,000,000원	3,000		
203 업무추진비	2,700	3,600	△900
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	2,700	3,600	△900
○보건의료서비스 업무추진 2,700,000원	2,700		
307 민간이전	3,900	0	3,900
01 의료 및 회복비	3,900	0	3,900
○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 650,000원*6개소	3,900		
보건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	380,556	235,530	145,026
201 일반운영비	380,556	36,630	343,926
01 사무관리비	380,556	36,630	343,926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
단위: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○의료영상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,306,000원*3개구*12월	47,016		
○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유지관리 522,500원*3개구*12월	18,810		
○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22,000,000원	22,000		
○의료영상저장시스템 DB접근제어 솔루션 180,000,000원	180,000		
○의료영상저장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104,230,000원	104,230		
○시약냉장고용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8,500,000원	8,500		
보건진료소 운영 지원	169,132	180,116	△10,984
201 일반운영비	52,932	60,276	△7,344
01 사무관리비	17,052	24,396	△7,344
○일반수용비(보건진료소) 900,000원*7개소	6,300		
○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20,000원*15명*7개소*1회	2,100		
○보건진료소 정수기, 공기청정기 임차료 70,000원*7개소*12월	5,880		
○죽능 보건진료소 청사 임차료 231,000원*12월	2,772		
02 공공운영비	35,880	35,880	0
○보건진료소 공공요금 2,240,000원*12월	26,880		
○보건진료소 연료비 2,250,000원*4개소	9,000		
307 민간이전	116,200	116,340	△140
01 의료 및 회복비	116,200	116,340	△140
○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16,600,000원*7개소	116,200		
청사유지관리	81,516	68,408	13,108
201 일반운영비	77,016	40,608	36,408
01 사무관리비	36,396	16,608	19,788
○무인경비 시스템 1,597,000원*12월	19,164		
○청사관리 소모품 250,000원*12월	3,000		
○승강기 안전관리 171,000원*1대*12월	2,052		
○보건소 정수기, 공기청정기 임차료 29,000원*35대*12월	12,180		
02 공공운영비	40,620	24,000	16,620
○청사시설 유지관리 100,000원*15개소*12월	18,000		
○공용차량 유지비 85,000원*14대*12월	14,280		
○보건지소 공공요금 545,000원*12월	6,540		
○보건지소 연료비 1,800원*1,000ℓ	1,800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
단위: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

(단위:천원)

부서·정책·단위(회계)·세부사업·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401 시설비및부대비	4,500	27,800	△23,300
01 시설비	4,500	27,800	△23,300
○보건진료소 방수공사 4,500,000원	4,500		
방역·구호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	7,175,934	5,774,719	1,401,215
	국 10,969		
	기 2,918,165		
	도 872,743		
	시 3,374,057		
체계적인 감염병관리	1,013,003	987,781	25,222
	국 10,969		
	기 91,332		
	도 15,843		
	시 894,859		
감염병 대응	23,200	34,800	△11,600
201 일반운영비	19,200	26,800	△7,600
01 사무관리비	17,000	21,000	△4,000
○감염병 대응 및 예방사업 운영 15,000,000원	15,000		
○감염병 관리 위원회 참석수당 100,000원*10명*2회	2,000		
02 공공운영비	1,200	1,800	△600
○감염병 신고 전화 통신비 50,000원*2대*12월	1,200		
03 행사운영비	1,000	4,000	△3,000
○감염병 교육 강사비 등 1,000,000원	1,000		
307 민간이전	4,000	8,000	△4,000
01 의료 및 회복비	4,000	8,000	△4,000
○감염병 대응 방역물품 구입 4,000,000원	4,000		
표본감시 운영경비	7,080	4,440	2,640
	기 3,540		
	도 1,062		
	시 2,478		
307 민간이전	7,080	4,440	2,640
	기 3,540		
	도 1,062		
	시 2,478		
02 민간경상사업보조	7,080	4,440	2,640
○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7,080,000원	7,080		
	기 3,540		
	도 1,062		
	시 2,478		
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	5,400	6,480	△1,080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
정책: 방역 · 구호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
단위: 체계적인 감염병관리

(단위:천원)

부서 · 정책 · 단위(회계) · 세부사업 · 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기 5,400		
307 민간이전	5,400	6,480	△1,080
	기 5,400		
02 민간경상사업보조	5,400	6,480	△1,080
○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			
1,800,000원*3개소	5,400		
	기 5,400		
보건소 결핵관리사업	57,892	51,771	6,121
	기 28,946		
	도 8,684		
	시 20,262		
201 일반운영비	13,000	10,640	2,360
	기 6,500		
	도 1,950		
	시 4,550		
01 사무관리비	13,000	10,640	2,360
○홍보 및 소모품 등 구입			
11,560,000원	11,560		
	기 5,780		
	도 1,734		
	시 4,046		
○결핵실 살균기 등 임차료			
120,000원*12월	1,440		
	기 720		
	도 216		
	시 504		
202 여비	2,400	2,400	0
	기 1,200		
	도 360		
	시 840		
01 국내여비	2,400	2,400	0
○출장여비 10,000원*2명*10일*12월	2,400		
	기 1,200		
	도 360		
	시 840		
307 민간이전	42,492	38,731	3,761
	기 21,246		
	도 6,374		
	시 14,872		
01 의료 및 회복비	42,492	38,731	3,761
○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			
3,510,000원	3,510		
	기 1,755		
	도 527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
정책: 방역 · 구호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
단위: 체계적인 감염병관리

(단위:천원)

부서 · 정책 · 단위(회계) · 세부사업 · 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시	1,228		
○결핵역학조사 등 11,864,000원		11,864		
	기	5,932		
	도	1,779		
	시	4,153		
○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 4,000,000원		4,000		
	기	2,000		
	도	600		
	시	1,400		
○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관리 23,118,000원		23,118		
	기	11,559		
	도	3,468		
	시	8,091		
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		34,960	33,800	1,160
	기	17,480		
	도	5,243		
	시	12,237		
101 인건비		34,760	33,500	1,260
	기	17,380		
	도	5,213		
	시	12,167		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	34,760	33,500	1,260
○인건비 33,960,000원		33,960		
	기	16,980		
	도	5,093		
	시	11,887		
○출장여비 10,000원*1명*10일*8월		800		
	기	400		
	도	120		
	시	280		
201 일반운영비		200	300	△100
	기	100		
	도	30		
	시	70		
01 사무관리비		200	300	△100
○결핵관리요원 교육비 200,000원		200		
	기	100		
	도	30		
	시	70		
결핵진단검사지원		3,697	7,807	△4,110
	국	1,849		
	도	554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
정책: 방역 · 구호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
단위: 체계적인 감염병관리

(단위:천원)

부서 · 정책 · 단위(회계) · 세부사업 · 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시 1,294		
307 민간이전	3,697	7,807	△4,110
	국 1,849		
	도 554		
	시 1,294		
01 의료 및 회복비	3,697	7,807	△4,110
○결핵진단검사지원 3,697,000원	3,697		
	국 1,849		
	도 554		
	시 1,294		
감염병관리 운영지원	103,500	103,300	200
101 인건비	6,600	3,900	2,700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6,600	3,900	2,700
○의료기사 대체인력 150,000원*44일	6,600		
201 일반운영비	9,900	12,400	△2,500
01 사무관리비	7,500	10,000	△2,500
○검사실 폐수 위탁처리 500원*6,000ℓ	3,000		
○검사실 위탁검사 25,000원*180명	4,500		
02 공공운영비	2,400	2,400	0
○일반 의료장비 유지 200,000원*12월	2,400		
307 민간이전	87,000	87,000	0
01 의료 및 회복비	87,000	87,000	0
○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21,750,000원*4회	87,000		
에이즈 및 성병예방(HIV 검진비(검진시약) 지원)	3,758	3,758	0
	기 1,879		
	시 1,879		
307 민간이전	3,758	3,758	0
	기 1,879		
	시 1,879		
01 의료 및 회복비	3,758	3,758	0
○HIV 진단시약 및 소모품 구입 3,758,000원	3,758		
	기 1,879		
	시 1,879		
에이즈 및 성병예방(성매개감염병 검진시약 · 치료비 지원)	716	716	0
	기 358		
	시 358		
307 민간이전	716	716	0
	기 358		
	시 358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
정책: 방역 · 구호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
단위: 체계적인 감염병관리

(단위:천원)

부서 · 정책 · 단위(회계) · 세부사업 · 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01 의료 및 회복비	716	716	0
O성매개감염병 진단시약 및 소모품 구입 716,000원	716		
	기 358		
	시 358		
에이즈 및 성병예방(HIV, AIDS 진료비)	67,458	59,066	8,392
	기 33,729		
	시 33,729		
201 일반운영비	4,000	0	4,000
	기 2,000		
	시 2,000		
01 사무관리비	4,000	0	4,000
OHIV, AIDS 예방교육 및 홍보 4,000,000원	4,000		
	기 2,000		
	시 2,000		
307 민간이전	63,458	59,066	4,392
	기 31,729		
	시 31,729		
01 의료 및 회복비	63,458	59,066	4,392
OHIV, AIDS 진료비 지원 63,458,000원	63,458		
	기 31,729		
	시 31,729		
한센인 의료지원	3,000	3,000	0
	도 300		
	시 2,700		
307 민간이전	3,000	3,000	0
	도 300		
	시 2,700		
01 의료 및 회복비	3,000	3,000	0
O한센인 의료지원 3,000,000원	3,000		
	도 300		
	시 2,700		
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	9,120	9,120	0
	국 9,120		
307 민간이전	9,120	9,120	0
	국 9,120		
01 의료 및 회복비	9,120	9,120	0
O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190,000원*4명*12월	9,120		
	국 9,120		
친환경 방역	693,222	659,115	34,107
101 인건비	21,407	20,847	560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
정책: 방역 · 구호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
단위: 체계적인 감염병관리

(단위:천원)

부서 · 정책 · 단위(회계) · 세부사업 · 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21,407	20,847	560
○방역소독 인건비	21,207		
o기본급 93,360원*1명*170일	15,872		
o유급휴일수당 93,360원*1명*55일	5,135		
o명절수당 200,000원*1명*1일	200		
○피복비 50,000원*1명*2회	100		
○안전보호구 구입비 50,000원*1명*2회	100		
201 일반운영비	575,615	8,100	567,515
01 사무관리비	575,615	8,100	567,515
○방역소독	567,515		
o연무소독 274,390원*14개소*130일	499,390		
o분무소독 274,310원*1개소*130일	35,661		
o유충구제 249,720원*1개소*130일	32,464		
○방역장비 수리 및 소모품 8,100,000원	8,100		
203 업무추진비	1,800	1,800	0
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	1,800	1,800	0
○감염병 및 방역 업무추진 1,800,000원	1,800		
206 재료비	85,500	85,500	0
01 재료비	85,500	85,500	0
○방역소독 약품 85,500,000원	85,500		
405 자산취득비	8,900	0	8,900
01 자산및물품취득비	8,900	0	8,900
○물리적 방제기 890,000원*10대	8,900		
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	6,162,931	4,786,938	1,375,993
	기 2,826,833		
	도 856,900		
	시 2,479,198		
보건소 예방접종	479,769	431,452	48,317
101 인건비	20,167	19,270	897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20,167	19,270	897
○예방접종사업 운영 인건비(간호사 등)	20,167		
o기본급 93,360원*2명*82일	15,312		
o유급휴일수당 93,360원*2명*26일	4,855		
201 일반운영비	9,000	9,000	0
01 사무관리비	5,000	4,000	1,000
○예방접종사업 홍보비 5,000,000원	5,000		
02 공공운영비	4,000	5,000	△1,000
○예방접종사업 우편요금 4,000,000원	4,000		
307 민간이전	450,602	394,582	56,020
01 의료 및 회복비	450,602	394,582	56,020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
정책: 방역 · 구호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
단위: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

(단위:천원)

부서 · 정책 · 단위(회계) · 세부사업 · 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○자체 예방접종사업		450,602		
o 예방접종사업 소모품 구입 1,000,000원*2회		2,000		
o 예방접종사업 약품(B형간염 등) 구입 8,400,000원		8,400		
o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31,680,000원		31,680		
o 용인시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70,038,000원		370,038		
o AI대응요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8,484,000원		38,484		
국가예방접종사업		3,726,246	3,816,489	△90,243
	기	1,863,123		
	도	558,938		
	시	1,304,185		
307 민간이전		3,726,246	3,816,489	△90,243
	기	1,863,123		
	도	558,938		
	시	1,304,185		
01 의료 및 회복비		3,726,246	3,816,489	△90,243
○국가예방접종사업 3,726,246,000원		3,726,246		
	기	1,863,123		
	도	558,938		
	시	1,304,185		
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		29,496	0	29,496
	도	8,849		
	시	20,647		
307 민간이전		29,496	0	29,496
	도	8,849		
	시	20,647		
01 의료 및 회복비		29,496	0	29,496
○예방접종비용 지원 29,496,000원		29,496		
	도	8,849		
	시	20,647		
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		1,927,420	538,997	1,388,423
	기	963,710		
	도	289,113		
	시	674,597		
307 민간이전		1,927,420	538,997	1,388,423
	기	963,710		
	도	289,113		
	시	674,597		
01 의료 및 회복비		1,927,420	538,997	1,388,423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
정책: 방역 · 구호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
단위: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

(단위:천원)

부서 · 정책 · 단위(회계) · 세부사업 · 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○예방접종 시행비 및 백신비 1,927,420,000원	1,927,420		
	기 963,710		
	도 289,113		
	시 674,597		
행정운영경비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	296,994	403,446	△106,452
	기 21,366		
	도 6,410		
	시 269,218		
인력운영비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	152,558	211,040	△58,482
	기 21,366		
	도 6,410		
	시 124,782		
보건의료서비스 지원(공중보건의사)	100,800	160,440	△59,640
101 인건비	97,200	156,600	△59,400
02 기타직보수	97,200	156,600	△59,400
○공중보건의사 의료업무 수당 1,300,000원*6명*12월	93,600		
○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50,000원*6명*12월	3,600		
202 여비	3,600	3,840	△240
01 국내여비	3,600	3,840	△240
○보건진료 활동 10,000원*5명*6회*12월	3,600		
보건의료서비스 지원(공무직근로자)	9,026	8,972	54
201 일반운영비	200	150	50
01 사무관리비	200	150	50
○청사관리원 피복비 150,000원*1명*1회	150		
○청사관리원 안전보호구 구입비 50,000원*1명*1회	50		
304 연금부담금등	8,826	8,822	4
04 공무직(무기계약)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	8,826	8,822	4
○보건소 공무직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	8,826		
o국민연금 3,300,000원*2명*12월*4.5%	3,564		
o건강보험 3,300,000원*2명*12월*3.545%*112.95%	3,172		
o고용보험 3,300,000원*2명*12월*1.75%	1,386		
o산재보험 3,300,000원*2명*12월*0.888%	704		
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(인건비)	42,732	41,628	1,104
	기 21,366		
	도 6,410		
	시 14,956		
101 인건비	41,532	40,428	1,104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
정책: 행정운영경비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
단위: 인력운영비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기 20,766		
	도 6,230		
	시 14,536		
03 공무직(무기계약)근로자보수	41,532	40,428	1,104
○인건비 41,532,000원*1명	41,532		
	기 20,766		
	도 6,230		
	시 14,536		
202 여비	1,200	1,200	0
	기 600		
	도 180		
	시 420		
01 국내여비	1,200	1,200	0
○출장여비 10,000원*1명*10일*12월	1,200		
	기 600		
	도 180		
	시 420		
기본경비(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)	144,436	192,406	△47,970
기본경비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	144,436	192,406	△47,970
201 일반운영비	92,496	136,596	△44,100
01 사무관리비	92,496	107,976	△15,480
○일반수용비(보건소) 60,000원*51명*12월	36,720		
○급식비 9,000원*51명*2일*12월	11,016		
○일직비 60,000원*2명*119일	14,280		
○홍보물 및 일간지 구독료 90,000원*12월	1,080		
○행정장비 운영	29,400		
o 소모품 300,000원*22대*4회	26,400		
o 장비유지 3,000,000원	3,000		
202 여비	28,800	32,400	△3,600
01 국내여비	28,800	32,400	△3,600
○기본업무추진 10,000원*48명*5일*12월	28,800		
203 업무추진비	17,140	17,410	△270
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	6,300	6,300	0
○소장 6,300,000원	6,300		
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	4,300	4,270	30
○100명까지 40,000원*100명	4,000		
○101~400명 30,000원*10명	300		
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	6,540	6,840	△300
○31인 이상(59인) 545,000원*12월	6,540		
204 직무수행경비	6,000	6,000	0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
정책: 행정운영경비(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)
단위: 기본경비(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)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		6,000	6,000	0
○4급	400,000원*1명*12월	4,800		
○5급	100,000원*1명*12월	1,200		

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		12,560,093	11,823,931	736,162
	국	2,797,698		
	균	66,049		
	기	903,911		
	도	5,148,184		
	시	3,644,251		
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		8,226,980	7,886,471	340,509
	국	212,000		
	균	66,049		
	기	884,051		
	도	3,930,631		
	시	3,134,249		
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		696,710	685,952	10,758
	균	66,049		
	기	248,102		
	도	84,353		
	시	298,206		
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		1,910	1,940	△30
	기	955		
	시	955		
201 일반운영비		1,910	1,940	△30
	기	955		
	시	955		
01 사무관리비		1,910	1,940	△30
○교육훈련비 1,910,000원		1,910		
	기	955		
	시	955		
방문건강관리사업(방문건강관리)		132,098	119,618	12,480
	균	66,049		
	시	66,049		
101 인건비		21,500	21,500	0
	균	10,750		
	시	10,750		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	21,500	21,500	0
○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여비 21,500,000원*1명		21,500		
	균	10,750		
	시	10,750		
201 일반운영비		47,008	41,878	5,130
	균	23,504		
	시	23,504		
01 사무관리비		47,008	41,878	5,130
○사업운영 및 홍보 등 47,008,000원		47,008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균 23,504		
	시 23,504		
202 여비	25,920	20,160	5,760
	균 12,960		
	시 12,960		
01 국내여비	25,920	20,160	5,760
○출장여비 20,000원*9명*12일*12월	25,920		
	균 12,960		
	시 12,960		
301 일반보전금	5,670	6,080	△410
	균 2,835		
	시 2,835		
11 행사실비지원금	5,670	6,080	△410
○홀로어르신 모임 급식비 등 5,670,000원	5,670		
	균 2,835		
	시 2,835		
307 민간이전	32,000	30,000	2,000
	균 16,000		
	시 16,000		
01 의료 및 회복비	32,000	30,000	2,000
○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32,000,000원	32,000		
	균 16,000		
	시 16,000		
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	69,472	69,472	0
	기 34,736		
	시 34,736		
201 일반운영비	200	200	0
	기 100		
	시 100		
01 사무관리비	200	200	0
○지역사회 건강조사 운영물품 구입 200,000원	200		
	기 100		
	시 100		
301 일반보전금	300	300	0
	기 150		
	시 150		
11 행사실비지원금	300	300	0
○지역사회 건강조사 간담회 운영 300,000원	300		
	기 150		
	시 150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307 민간이전	68,972	68,972	0
	기 34,486		
	시 34,486		
05 민간위탁금	68,972	68,972	0
○지정위탁비 68,972,000원	68,972		
	기 34,486		
	시 34,486		
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	148,486	165,518	△17,032
	기 74,243		
	시 74,243		
101 인건비	40,000	39,000	1,000
	기 20,000		
	시 20,000		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40,000	39,000	1,000
○금연지도점검사 인건비 2,500,000원*2명*8월	40,000		
	기 20,000		
	시 20,000		
201 일반운영비	46,266	59,738	△13,472
	기 23,133		
	시 23,133		
01 사무관리비	45,786	58,338	△12,552
○사업운영 및 금연환경 조성 등 45,786,000원	45,786		
	기 22,893		
	시 22,893		
02 공공운영비	480	1,400	△920
○상해보험료 160,000원*3명	480		
	기 240		
	시 240		
202 여비	3,360	2,880	480
	기 1,680		
	시 1,680		
01 국내여비	3,360	2,880	480
○금연지원 출장여비 10,000원*2명*14일*12월	3,360		
	기 1,680		
	시 1,680		
301 일반보전금	23,760	28,800	△5,040
	기 11,880		
	시 11,880		
14 기타보상금	23,760	28,800	△5,040
○금연지도원 수당 60,000원*3명*11일*12월	23,760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기 11,880		
	시 11,880		
307 민간이전	35,100	35,100	0
	기 17,550		
	시 17,550		
01 의료 및 회복비	35,100	35,100	0
○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 등 35,100,000원	35,100		
	기 17,550		
	시 17,550		
암환자지원(재가암환자관리)(전환사업)	5,348	5,348	0
	도 2,674		
	시 2,674		
201 일반운영비	2,674	2,674	0
	도 1,337		
	시 1,337		
01 사무관리비	2,674	2,674	0
○재가암환자관리 사업운영 및 홍보 등 2,674,000원	2,674		
	도 1,337		
	시 1,337		
307 민간이전	2,674	2,674	0
	도 1,337		
	시 1,337		
01 의료 및 회복비	2,674	2,674	0
○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2,674,000원	2,674		
	도 1,337		
	시 1,337		
치매치료관리비 지원(전환)	129,045	119,000	10,045
	도 74,201		
	시 54,844		
307 민간이전	129,045	119,000	10,045
	도 74,201		
	시 54,844		
01 의료 및 회복비	129,045	119,000	10,045
○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29,045,000원	129,045		
	도 74,201		
	시 54,844		
치매관리체계 구축(치매안심센터 운영)	165,724	164,936	788
	기 132,600		
	도 4,969		
	시 28,155		
201 일반운영비	63,620	63,706	△86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기	50,905		
	도	1,906		
	시	10,809		
01 사무관리비		59,129	56,815	2,314
○치매관리사업 운영 및 홍보 등				
59,129,000원		59,129		
	기	47,312		
	도	1,771		
	시	10,046		
02 공공운영비		2,491	4,891	△2,400
○우편요금 1,600,000원		1,600		
	기	1,280		
	도	48		
	시	272		
○AI돌봄로봇 통신요금 99,000원*9대		891		
	기	713		
	도	27		
	시	151		
03 행사운영비		2,000	2,000	0
○치매극복의 날 행사 등 2,000,000원		2,000		
	기	1,600		
	도	60		
	시	340		
202 여비		8,400	8,400	0
	기	6,720		
	도	252		
	시	1,428		
01 국내여비		8,400	8,400	0
○출장여비 10,000원*14명*5일*12월		8,400		
	기	6,720		
	도	252		
	시	1,428		
301 일반보전금		28,904	41,530	△12,626
	기	23,135		
	도	867		
	시	4,902		
11 행사실비지원금		2,150	3,800	△1,650
○행사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				
2,150,000원		2,150		
	기	1,720		
	도	65		
	시	365		
14 기타보상금		26,754	37,730	△10,976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○협력의사 수당	26,754,000원	26,754		
		기 21,415		
		도 802		
		시 4,537		
307 민간이전		64,800	49,800	15,000
		기 51,840		
		도 1,944		
		시 11,016		
01 의료 및 회복비		64,800	49,800	15,000
○치매검사비 지원	6,490,000원	6,490		
		기 5,192		
		도 195		
		시 1,103		
○조호물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	58,310,000원	58,310		
		기 46,648		
		도 1,749		
		시 9,913		
치매관리체계 구축(치매공공후견 지원)		6,960	7,200	△240
		기 5,568		
		도 209		
		시 1,183		
201 일반운영비		360	600	△240
		기 288		
		도 11		
		시 61		
01 사무관리비		90	300	△210
○심판절차비용 지원 등 운영비	90,000원	90		
		기 72		
		도 3		
		시 15		
02 공공운영비		270	300	△30
○치매공공후견인 상해보험료	270,000원	270		
		기 216		
		도 8		
		시 46		
301 일반보전금		6,600	6,600	0
		기 5,280		
		도 198		
		시 1,122		
14 기타보상금		6,600	6,600	0
○후견인 활동비	6,600,000원	6,600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기 5,280		
	도 198		
	시 1,122		
치매감별검사비 지원	7,667	0	7,667
	도 2,300		
	시 5,367		
307 민간이전	7,667	0	7,667
	도 2,300		
	시 5,367		
01 의료 및 회복비	7,667	0	7,667
○치매감별검사비 지원 7,667,000원	7,667		
	도 2,300		
	시 5,367		
한의약 치매예방사업	30,000	30,000	0
307 민간이전	30,000	30,000	0
01 의료 및 회복비	30,000	30,000	0
○치매한방진료 치료비 지원 600,000원*50명	30,000		
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	6,175,864	5,707,446	468,418
	국 212,000		
	기 85,504		
	도 3,735,805		
	시 2,142,555		
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전환사업)	2,724,000	2,400,000	324,000
	도 1,906,800		
	시 817,200		
307 민간이전	2,724,000	2,400,000	324,000
	도 1,906,800		
	시 817,200		
01 의료 및 회복비	2,724,000	2,400,000	324,000
○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3개구) 2,724,000,000원	2,724,000		
	도 1,906,800		
	시 817,200		
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	1,470,000	1,470,000	0
	도 735,000		
	시 735,000		
307 민간이전	1,470,000	1,470,000	0
	도 735,000		
	시 735,000		
01 의료 및 회복비	1,470,000	1,470,000	0
○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3개구) 1,470,000,000원	1,470,000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도	735,000		
	시	735,000		
표준모자보건수첩		2,000	2,000	0
307 민간이전		2,000	2,000	0
01 의료 및 회복비		2,000	2,000	0
○표준모자보건수첩 등 지원 2,000,000원		2,000		
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		4,000	2,130	1,870
	기	2,000		
	도	1,000		
	시	1,000		
307 민간이전		4,000	2,130	1,870
	기	2,000		
	도	1,000		
	시	1,000		
01 의료 및 회복비		4,000	2,130	1,870
○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4,000,000원		4,000		
	기	2,000		
	도	1,000		
	시	1,000		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전환)		528,300	302,868	225,432
	도	396,225		
	시	132,075		
307 민간이전		528,300	302,868	225,432
	도	396,225		
	시	132,075		
01 의료 및 회복비		528,300	302,868	225,432
○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28,300,000원		528,300		
	도	396,225		
	시	132,075		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경기형)		158,500	181,788	△23,288
	도	118,875		
	시	39,625		
307 민간이전		158,500	181,788	△23,288
	도	118,875		
	시	39,625		
01 의료 및 회복비		158,500	181,788	△23,288
○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58,500,000원		158,500		
	도	118,875		
	시	39,625		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용인형)		84,000	150,000	△66,000
307 민간이전		84,000	150,000	△66,000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01 의료 및 회복비		84,000	150,000	△66,000
○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140,000원*600회		84,000		
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		6,000	6,000	0
	기	3,000		
	도	1,500		
	시	1,500		
307 민간이전		6,000	6,000	0
	기	3,000		
	도	1,500		
	시	1,500		
01 의료 및 회복비		6,000	6,000	0
○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1,000,000원*6회		6,000		
	기	3,000		
	도	1,500		
	시	1,500		
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		24,500	66,000	△41,500
	도	18,375		
	시	6,125		
307 민간이전		24,500	66,000	△41,500
	도	18,375		
	시	6,125		
01 의료 및 회복비		24,500	66,000	△41,500
○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24,500,000원		24,500		
	도	18,375		
	시	6,125		
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		6,000	0	6,000
	기	3,000		
	도	1,500		
	시	1,500		
307 민간이전		6,000	0	6,000
	기	3,000		
	도	1,500		
	시	1,500		
01 의료 및 회복비		6,000	0	6,000
○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6,000,000원		6,000		
	기	3,000		
	도	1,500		
	시	1,500		
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		8,000	0	8,000
	도	4,000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시	4,000		
307 민간이전		8,000	0	8,000
	도	4,000		
	시	4,000		
01 의료 및 회복비		8,000	0	8,000
○난자동결 시술비 지원				
2,000,000원*4명		8,000		
	도	4,000		
	시	4,000		
영유아 건강검진 지원		2,460	2,640	△180
	기	1,968		
	도	246		
	시	246		
307 민간이전		2,460	2,640	△180
	기	1,968		
	도	246		
	시	246		
01 의료 및 회복비		2,460	2,640	△180
○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2,460,000원		2,460		
	기	1,968		
	도	246		
	시	246		
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		2,550	5,400	△2,850
	기	2,040		
	도	255		
	시	255		
307 민간이전		2,550	5,400	△2,850
	기	2,040		
	도	255		
	시	255		
01 의료 및 회복비		2,550	5,400	△2,850
○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				
2,550,000원		2,550		
	기	2,040		
	도	255		
	시	255		
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		730	660	70
	기	584		
	도	73		
	시	73		
201 일반운영비		730	660	70
	기	584		
	도	73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시	73		
01 사무관리비		730	660	70
○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730,000원		730		
	기	584		
	도	73		
	시	73		
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		4,160	6,240	△2,080
	기	2,080		
	도	1,040		
	시	1,040		
307 민간이전		4,160	6,240	△2,080
	기	2,080		
	도	1,040		
	시	1,040		
01 의료 및 회복비		4,160	6,240	△2,080
○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4,160,000원		4,160		
	기	2,080		
	도	1,040		
	시	1,040		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		41,400	47,720	△6,320
	기	20,700		
	도	10,350		
	시	10,350		
307 민간이전		41,400	47,720	△6,320
	기	20,700		
	도	10,350		
	시	10,350		
01 의료 및 회복비		41,400	47,720	△6,320
○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1,400,000원		41,400		
	기	20,700		
	도	10,350		
	시	10,350		
저소득층 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		424,000	424,000	0
	국	212,000		
	도	106,000		
	시	106,000		
307 민간이전		424,000	424,000	0
	국	212,000		
	도	106,000		
	시	106,000		
01 의료 및 회복비		424,000	424,000	0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○저소득층 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 424,000,000원	424,000		
	국 212,000		
	도 106,000		
	시 106,000		
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	585,000	640,000	△55,000
	도 409,500		
	시 175,500		
301 일반보전금	585,000	640,000	△55,000
	도 409,500		
	시 175,500		
02 사회보장적수혜금(취약계층, 지방재원)	585,000	640,000	△55,000
○산후조리비 지원 585,000,000원	585,000		
	도 409,500		
	시 175,500		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	100,264	0	100,264
	기 50,132		
	도 25,066		
	시 25,066		
307 민간이전	100,264	0	100,264
	기 50,132		
	도 25,066		
	시 25,066		
01 의료 및 회복비	100,264	0	100,264
○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100,264,000원	100,264		
	기 50,132		
	도 25,066		
	시 25,066		
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	8,391	9,591	△1,200
건강증진	8,391	9,591	△1,200
201 일반운영비	3,891	5,091	△1,200
01 사무관리비	3,891	5,091	△1,200
○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임차료 40,525원*8대*12월	3,891		
203 업무추진비	4,500	4,500	0
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	4,500	4,500	0
○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 4,500,000원	4,500		
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	375,547	432,212	△56,665
	기 112,664		
	시 262,883		
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(건강생활실천)	71,500	100,740	△29,240
	기 21,450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시	50,050		
201 일반운영비		68,800	80,140	△11,340
	기	20,640		
	시	48,160		
01 사무관리비		68,800	80,140	△11,340
○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인력교육 등 62,300,000원		62,300		
	기	18,690		
	시	43,610		
○건강놀이극 등 운영 6,500,000원		6,500		
	기	1,950		
	시	4,550		
202 여비		2,700	3,600	△900
	기	810		
	시	1,890		
01 국내여비		2,700	3,600	△900
○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여비 10,000원*5명*4.5일*12월		2,700		
	기	810		
	시	1,890		
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(영양플러스)		104,900	115,720	△10,820
	기	31,470		
	시	73,430		
201 일반운영비		2,564	6,520	△3,956
	기	769		
	시	1,795		
01 사무관리비		2,564	6,520	△3,956
○영양플러스사업 운영 및 홍보 등 2,564,000원		2,564		
	기	769		
	시	1,795		
307 민간이전		102,336	109,200	△6,864
	기	30,701		
	시	71,635		
01 의료 및 회복비		102,336	109,200	△6,864
○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82,000원*12월*104명		102,336		
	기	30,701		
	시	71,635		
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(모바일 헬스케어)		45,000	70,000	△25,000
	기	13,500		
	시	31,500		
101 인건비		20,500	39,600	△19,100
	기	6,150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시	14,350		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	20,500	39,600	△19,100
○모바일헬스케어사업 인건비 및 여비				
20,500,000원*1명		20,500		
	기	6,150		
	시	14,350		
201 일반운영비		14,500	20,900	△6,400
	기	4,350		
	시	10,150		
01 사무관리비		14,500	20,900	△6,400
○모바일헬스케어사업 운영 및 홍보 등				
14,500,000원		14,500		
	기	4,350		
	시	10,150		
301 일반보전금		2,000	4,500	△2,500
	기	600		
	시	1,400		
14 기타보상금		2,000	4,500	△2,500
○모바일 상품권 5,000원*40명*10회		2,000		
	기	600		
	시	1,400		
307 민간이전		8,000	5,000	3,000
	기	2,400		
	시	5,600		
01 의료 및 회복비		8,000	5,000	3,000
○검사재료 소모품 구입 8,000,000원		8,000		
	기	2,400		
	시	5,600		
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(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)		30,000	50,752	△20,752
	기	9,000		
	시	21,000		
201 일반운영비		20,000	37,752	△17,752
	기	6,000		
	시	14,000		
01 사무관리비		20,000	37,752	△17,752
○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 및 홍보 등				
20,000,000원		20,000		
	기	6,000		
	시	14,000		
307 민간이전		10,000	13,000	△3,000
	기	3,000		
	시	7,000		
01 의료 및 회복비		10,000	13,000	△3,000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○검사재료, 소모품 구입 등 10,000,000원	10,000		
	기 3,000		
	시 7,000		
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(한의약 건강증진)	8,000	10,000	△2,000
	기 2,400		
	시 5,600		
201 일반운영비	8,000	10,000	△2,000
	기 2,400		
	시 5,600		
01 사무관리비	8,000	10,000	△2,000
○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홍보 등 8,000,000원	8,000		
	기 2,400		
	시 5,600		
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(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)	116,147	75,000	41,147
	기 34,844		
	시 81,303		
201 일반운영비	31,647	41,000	△9,353
	기 9,494		
	시 22,153		
01 사무관리비	31,647	41,000	△9,353
○사업운영 및 홍보 31,647,000원	31,647		
	기 9,494		
	시 22,153		
301 일반보전금	1,000	3,000	△2,000
	기 300		
	시 700		
11 행사실비지원금	500	3,000	△2,500
○교육 참여자 등 간식비 20,000원*25회	500		
	기 150		
	시 350		
14 기타보상금	500	0	500
○모바일 상품권 구입 5,000원*50명*2회	500		
	기 150		
	시 350		
307 민간이전	83,500	31,000	52,500
	기 25,050		
	시 58,450		
01 의료 및 회복비	83,500	31,000	52,500
○영양제 등 구입 79,500,000원	79,500		
	기 23,850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시	55,650		
○소모품 구입 4,000,000원		4,000		
	기	1,200		
	시	2,800		
검진과 의료비지원		970,468	1,051,270	△80,802
	기	437,781		
	도	110,473		
	시	422,214		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		40,800	44,200	△3,400
	기	20,400		
	도	10,200		
	시	10,200		
307 민간이전		40,800	44,200	△3,400
	기	20,400		
	도	10,200		
	시	10,200		
01 의료 및 회복비		40,800	44,200	△3,400
○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0,800,000원		40,800		
	기	20,400		
	도	10,200		
	시	10,200		
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		30,000	36,000	△6,000
	기	15,000		
	도	7,500		
	시	7,500		
307 민간이전		30,000	36,000	△6,000
	기	15,000		
	도	7,500		
	시	7,500		
01 의료 및 회복비		30,000	36,000	△6,000
○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0,000,000원		30,000		
	기	15,000		
	도	7,500		
	시	7,500		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		400,720	399,538	1,182
	기	200,360		
	시	200,360		
307 민간이전		400,720	399,538	1,182
	기	200,360		
	시	200,360		
01 의료 및 회복비		400,720	399,538	1,182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검진과 의료비지원

(단위:천원)

부서·정책·단위(회계)·세부사업·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○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400,720,000원	400,720		
	기 200,360		
	시 200,360		
국가암관리(암검진사업)	350,872	350,872	0
	기 175,436		
	도 26,315		
	시 149,121		
101 인건비	15,800	15,800	0
	기 7,900		
	도 1,185		
	시 6,715		
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15,800	15,800	0
○암검진사업 인건비 15,800,000원*1명	15,800		
	기 7,900		
	도 1,185		
	시 6,715		
307 민간이전	335,072	335,072	0
	기 167,536		
	도 25,130		
	시 142,406		
01 의료 및 회복비	335,072	335,072	0
○암검진비 지원 335,072,000원	335,072		
	기 167,536		
	도 25,130		
	시 142,406		
국가 암 검진	1,000	1,000	0
201 일반운영비	1,000	1,000	0
01 사무관리비	1,000	1,000	0
○국가암검진사업 홍보물 제작 1,000,000원	1,000		
암환자지원사업(암환자의료비지원)(전환사업)	113,845	192,790	△78,945
	도 65,461		
	시 48,384		
307 민간이전	113,845	192,790	△78,945
	도 65,461		
	시 48,384		
01 의료 및 회복비	113,845	192,790	△78,945
○암환자 의료비 지원 113,845,000원	113,845		
	도 65,461		
	시 48,384		
일반건강검진 지원	33,231	26,870	6,361
	기 26,585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시민 건강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검진과 의료비지원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도 997		
	시 5,649		
307 민간이전	33,231	26,870	6,361
	기 26,585		
	도 997		
	시 5,649		
01 의료 및 회복비	33,231	26,870	6,361
○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33,231,000원	33,231		
	기 26,585		
	도 997		
	시 5,649		
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	4,251,453	3,850,368	401,085
	국 2,585,698		
	도 1,217,553		
	시 448,202		
정신건강사업 운영	4,251,453	3,850,368	401,085
	국 2,585,698		
	도 1,217,553		
	시 448,202		
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	3,551,000	3,331,000	220,000
	국 2,485,000		
	도 1,066,000		
307 민간이전	3,551,000	3,331,000	220,000
	국 2,485,000		
	도 1,066,000		
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	3,551,000	3,331,000	220,000
○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,551,000,000원*1개소	3,551,000		
	국 2,485,000		
	도 1,066,000		
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	238,605	225,577	13,028
	도 23,860		
	시 214,745		
307 민간이전	238,605	225,577	13,028
	도 23,860		
	시 214,745		
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	238,605	225,577	13,028
○정신재활시설 운영비 238,605,000원	238,605		
	도 23,860		
	시 214,745		
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	221,664	224,229	△2,565
	도 22,166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정신건강사업 운영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시 199,498		
301 일반보전금	120,500	119,400	1,100
	도 12,050		
	시 108,450		
02 사회보장적수혜금(취약계층, 지방재원)	120,500	119,400	1,100
○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20,500,000원	120,500		
	도 12,050		
	시 108,450		
307 민간이전	101,164	104,829	△3,665
	도 10,116		
	시 91,048		
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	101,164	104,829	△3,665
○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회복비 등 101,164,000원	101,164		
	도 10,116		
	시 91,048		
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	31,200	30,600	600
	도 31,200		
301 일반보전금	31,200	30,600	600
	도 31,200		
02 사회보장적수혜금(취약계층, 지방재원)	31,200	30,600	600
○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0,000원*52명*12개월	31,200		
	도 31,200		
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지원	1,838	1,808	30
	도 1,838		
307 민간이전	1,838	1,808	30
	도 1,838		
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	1,838	1,808	30
○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비 919,000원*2개소	1,838		
	도 1,838		
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비 지원	2,000	2,000	0
	도 2,000		
307 민간이전	2,000	2,000	0
	도 2,000		
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	2,000	2,000	0
○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비 2,000,000원*1개소	2,000		
	도 2,000		
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	201,396	35,154	166,242
	국 100,698		
	도 70,489		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정신건강사업 운영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시 30,209		
402 민간자본이전	201,396	35,154	166,242
	국 100,698		
	도 70,489		
	시 30,209		
02 민간자본사업보조(이전재원)	201,396	35,154	166,242
○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			
201,396,000원*1개소	201,396		
	국 100,698		
	도 70,489		
	시 30,209		
중독예방사업운영	3,750	0	3,750
201 일반운영비	3,750	0	3,750
01 사무관리비	3,750	0	3,750
○중독예방사업 운영 3,750,000원	3,750		
행정운영경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	81,660	87,092	△5,432
	기 19,860		
	시 61,800		
인력운영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	39,720	38,720	1,000
	기 19,860		
	시 19,860		
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(인건비)	39,720	38,720	1,000
	기 19,860		
	시 19,860		
101 인건비	39,000	38,000	1,000
	기 19,500		
	시 19,500		
03 공무직(무기계약)근로자보수	39,000	38,000	1,000
○인건비 39,000,000원*1명	39,000		
	기 19,500		
	시 19,500		
202 여비	720	720	0
	기 360		
	시 360		
01 국내여비	720	720	0
○금연지원 출장여비			
10,000원*1명*6일*12월	720		
	기 360		
	시 360		
기본경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	41,940	48,372	△6,432
기본경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	41,940	48,372	△6,432
201 일반운영비	28,440	35,232	△6,792
01 사무관리비	28,440	35,232	△6,792

부서: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정책: 행정운영경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단위: 기본경비(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

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○일반수용비 60,000원*18명*12월	12,960		
○급식비 9,000원*10명*3일*12월	3,240		
○행정장비 운영	12,000		
ㅇ소모품 300,000원*10대*4회	12,000		
○홍보물 및 일간지 구독료 20,000원*12월	240		
202 여비	6,240	6,240	0
01 국내여비	6,240	6,240	0
○기본업무추진 10,000원*13명*4일*12월	6,240		
203 업무추진비	6,060	5,700	360
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	6,060	5,700	360
○31인 이상(51인) 505,000원*12월	6,060		
204 직무수행경비	1,200	1,200	0
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	1,200	1,200	0
○5급 100,000원*1명*12월	1,200		